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(행정문화국 마을자치과)

2021. 6. 10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090호

나. 제 출 자 : 박찬길 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1. 5. 28.

라. 회부일자 : 2021. 5. 28.

#### 2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7조의2 위임조항 신설(2019. 12. 3)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)

나. 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(안 제3조, 제4조)

다. 단장의 임무(안 제5조)

라. 실무팀의 편성(안 제6조)

마.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(안 제7조)

바.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(안 제9조)

##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련법령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1. 5. 28. ~ 6. 2.

#### 5. 검토의견

#### 가. 제정 배경

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금천구 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발의 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# 나. 주요 내용

- 1) 지원단의 설치·운영(안 제3조)
- 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설치·운영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함.
- 2) 지원단의 구성 및 단장 임무(안 제4조~제5조)

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단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

#### 3) 실무팀의 편성(안 제6조)

○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실무팀에 대하여 크게 상황총괄팀, 모집 배치팀, 활동관리팀, 활동지원팀 등 4개 팀으로 분류하고 있음.

#### 다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금천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관계법령

재나	및	안전관리기	보법
 ' 11 L.	$\overline{}$	ユロロロ	1 1

[시행 2020. 12. 10.] [법률 제17479호, 2020. 8. 18., 일부개정]

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자원봉사자의 모집 · 등록
- 2.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
- 3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- 4.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
- 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- 6.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12.3]